

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

훈 계 · 시 정 요 구

제 목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신청서 검토 부적정

기 관 명 충청남도

훈 계 대상 자 충청남도 ○○○○서 ○○○○단 지방○○○ ○○○

내 용

지방○○○ ○○○은 2016. 7. 1.부터 2017. 6. 30.까지 충청남도 예산○○○에서 위험물 허가 업무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.

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 제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따르면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와 제조소등의 위치·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, 구조설비명세표,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

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방서장은 제출 서류의 누락여부 및 ‘제조소등의 위치·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’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제출받은 도면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허가를 하여야 한다.

[표1] 설치허가 신청 저장탱크 중 인화방지장치 설치 현황

옥외탱크 저장소	저장물질	인화점	인화방지장치 설치여부	비고
ST-203	제4류 제1석유류 비수용성 S2(DN-601)	-10℃	×	
ST-204	제4류 제1석유류 비수용성 S-5(DN-1100)	-18℃	×	
ST-206	제4류 제1석유류(비) XYLENE	25℃	×	

한편 「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제30조 [별표 6] 규정에 따르면 인화점 70℃미만의 물질을 저장하는 옥외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외의 탱크에 밸브 없는 통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있으므로,

70℃ 미만의 인화물질을 보관하는 옥외탱크 저장소 설치 허가를 하려면 관련 도면 등을 확인하여 인화방지장치가 도면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한 후 설치 허가를 하여야 한다.

그러나 충청남도 ○○○○서에는 위험물 설치를 허가하면서 ‘주식회사 ○○○○’(접수번호: 2016- ○○○○○○○○)의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 3개소(ST-203, ST-204, ST-206)는 인화점이 -10℃~25℃로 낮아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도면에 「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, 구조 및 설비의 기준」에 따라 인화방지장치가 반영되었는지 확인한 후 허가를 하여야 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고 설치를 허가하였다.

조치할 사항 충청남도지사는

[훈계]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.

[시정] ‘주식회사 ○○○○○’의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 3개소(ST-203, ST-204, ST-206)를 「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, 구조 및 설비의 기준」에 적합하도록 인화방지장치를 설치토록 하고,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허가 업무 담당자를 주기적으로 교육하시기 바랍니다.